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10호 1928(昭和 3)년 5월 14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7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5월1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철도선로용품(鐵道線路用品), 전주(電柱), 시멘트류(cement類), 석회(石灰), 석탄(石炭), 석재(石材)의 항(項) 중(中) 품목(品目) 「전주(電柱)」를 「전로재료(電路材料)」로 개정(改正)함.